

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		
총	무	과

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8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명칭과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

나. 중복된 주민등록의 사무위임 규정을 정비하여 일원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 삭제(안 별표 1)

- 1) 6급 이하 일반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보직부여 및 소내 전보권
- 2) 청내 방호 및 제복무 관리, 일일명령, 문서의 접수 및 발송
- 3)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자진신고 납부 및 직권감면 업무, 수입증지 환매
- 4) 물품의 취득, 보관, 사용처분에 관한 업무
- 5) 입산통제구역의 지정, 입산신고 해제권, 산불예방 및 진화단속, 산림 기본 통제, 입목의 등록에 관한 사항
- 6) 농촌생활환경 정비 업무
- 7) 농업법인 육성 및 지도, 농지이용증진,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,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

나. 주민등록 사무위임 규정 정비 및 일원화(안 별표 2)

1)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사무명 및 근거법령 수정

가) 수정내용 :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(단, 주민등록증
신청, 접수, 교부, 수수료 징수는 읍·면·동장도 가능)

나) 근거법령 : 「주민등록법」 제2조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시장”을 “구미시장”으로, “출장소장·직속기관장·사업소장”을 “직속기관장·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시장”을 “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출장소장·직속기관장·사업소장”을 “직속기관장·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「구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」는 폐지한다.

■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[별표 1]

구미시 사무의 권한위임사항(제2조 관련)

구분	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내무 행정	인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기관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및 농촌지도사· 농업연구사의 보직부여 및 소내 전보권	지방공무원법 제6조	직속기관장, 사 업 소 장

■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[별표 2]

구미시 사무의 권한위임사항(제2조 관련)

구분	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내무 행정	1.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소속 직원의 연가, 병가, 공가, 특별휴가 처리	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	읍 면 동 장
		나. 파견 또는 주재직원의 복무에 관한 지휘 감독	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	읍 면 동 장
		다. 일일명령(당직, 출장, 비상근무 등)	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	읍 면 동 장
	2. 사무인계, 문서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	지방자치법 제119조 구미시 사무인계인수 규칙	읍 면 동 장
		나. 문서의 폐기	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	읍 면 동 장
	3. 인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및 당해 읍면동 내 전보	지방공무원법 제6조	읍 면 동 장
	4.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 1) 법 제24조, 제24조의2 및 제27조, 제2 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(단, 주민등록증 신청, 접수, 교부, 수수료 징수는 읍면동장도 기능) 2)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) 신청인이 시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29 조, 제29조의2, 영 제47조 및 영 제48 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 4)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 및 회수된 주민등록증 파기	주민등록법 제2조	읍 면 동 장
	5.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중 다음의 권한	가. 융자금 대부신청 및 관리	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제4조 및 제9조	읍 면 동 장
	6. 출입국 사실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	출입국관리법 제88조	읍 면 동 장
	7.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	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	읍 면 동 장
		나.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	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	읍 면 동 장

구분	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재무 행정	1.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조정 징수	지방회계법 제21조	읍 면 동 장
		나. 부동산 시가 표준액 조사 사무	지방세법 제10조	읍 면 동 장
		다. 토지 건축물 과세자료 관리	지방세법 제121조	읍 면 동 장
	2. 회계사무 중 다음의 권한	가. 추정금액이 5,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,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, 1,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(그 이외의 것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)	지방회계법 제8조 및 제10조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	읍 면 동 장
		나. 주민부담 1/2 이상인 공사의 집행	지방회계법 제8조 및 제10조	읍 면 동 장
		다. 5,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	지방회계법 제8조 및 제10조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	읍 면 동 장
	3.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시유 일반 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(단, 공유임야 대부 및 승낙, 분수립설정과 사후관리는 제외)	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	읍 면 동 장
	4. 물품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	가. 불용품 매각처리	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제4조	읍 면 동 장
복지 환경	1.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조사	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, 제24조	읍 면 동 장
		나.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 조사 및 변경	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, 제24조, 제29조	읍 면 동 장
	2.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	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	읍 면 동 장

구분	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복지 환경	3.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(지정폐기물 제외)	가.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	폐기물관리법 제8조, 제68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8조	읍 면 동 장
		나. 환경미화원 관리 감독	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	읍 면 동 장
		다.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	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	읍 면 장
		라. 청소장비관리	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	읍 면 동 장
		마. 관할 청소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, 운반	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, 제15조의2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	읍 면 장
		바.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	폐기물관리법 제15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	읍 면 동 장
		사. 규격봉투 판매업소 지정신청 전달 및 업소관리	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	읍 면 장
		아. 시민의 청소 계몽 지도	폐기물관리법 제15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	읍 면 동 장
		자. 재활용품 수집단체 지정	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	읍 면 동 장
		차. 재활용품수집단체 관리 보관시설 설치 및 장비 유지관리	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	읍 면 동 장
	4. 오수,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신고대상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	하수도법 제34조, 제35조	읍 면 장
		나. 신고대상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준공검사	하수도법 제37조	읍 면 장
		다.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	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, 제15조, 제41조	읍 면 동 장
		라.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	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	읍 면 동 장
	5.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매장, 화장, 개장의 신고	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	읍 면 동 장
		나. 공설묘지 사용 허가	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	읍 면 동 장
	6. 농작물 피해 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	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	읍 면 동 장

구분	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산업 행정	1.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	농지법 제8조, 제8조의2	읍 면 동 장
		나. 자경증명의 발급	농지법 제50조	읍 면 동 장
		다. 농지전용신고	농지법 제35조	읍 면 장
경제 통상	1.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시장 사용의 허가, 취소, 제한 및 변경사항의 신고 사용료의 부과, 징수	구미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	읍 면 동 장
		나.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	구미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, 제7조,	읍 면 동 장
		다.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, 원상회복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	구미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	읍 면 동 장
	2.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	가. 이륜차의 사용신고 등	자동차관리법 제48조	읍 면 동 장
		나. 이륜자동차의 번호판부착 및 봉인 등	자동차관리법 제49조	읍 면 동 장
		다.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규정	자동차관리법 제52조	읍 면 동 장
건설 도시	1. 도로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	가. 도로 일시 점용시설 허가(굴착제외) 및 일시사용 허가	도로법 제61조	읍 면 장
		나. 점용료 조정 징수	도로법 제66조	읍 면 장
		다. 도로 원인자 부담금 징수	도로법 제91조	읍 면 장
	2. 가로수 관리의 다음의 권한	가. 가로수 유지 관리	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	읍 면 장
	3. 상하수도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소규모급수시설 관리	수도법 제55조제2항	읍 면 장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<u>시장</u> 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<u>출장소장·직속기관장·사업소장</u> 및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 <u>구미시장</u> ----- ----- <u>직속기관장·사업소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위임사항) <u>시장</u> 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<u>출장소장·직속기관장·사업소장</u> 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,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.	제2조(위임사항) <u>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<u>직속기관장·사업소장</u> ----- ----- 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손 혁 영
	팀 장	김 태 식
	담 당 자	이 미 래 (480-6773)